

**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
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유재수 의원 대표발의)**

의안 번호	9-57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0. 2.

발 의 자 : 유재수, 박태순, 김재국,
황은화, 한명훈, 설호영,
최찬규, 이해경, 현옥순,
한갑수, 최진호, 이지화,
박은정, 선현우 의원
(14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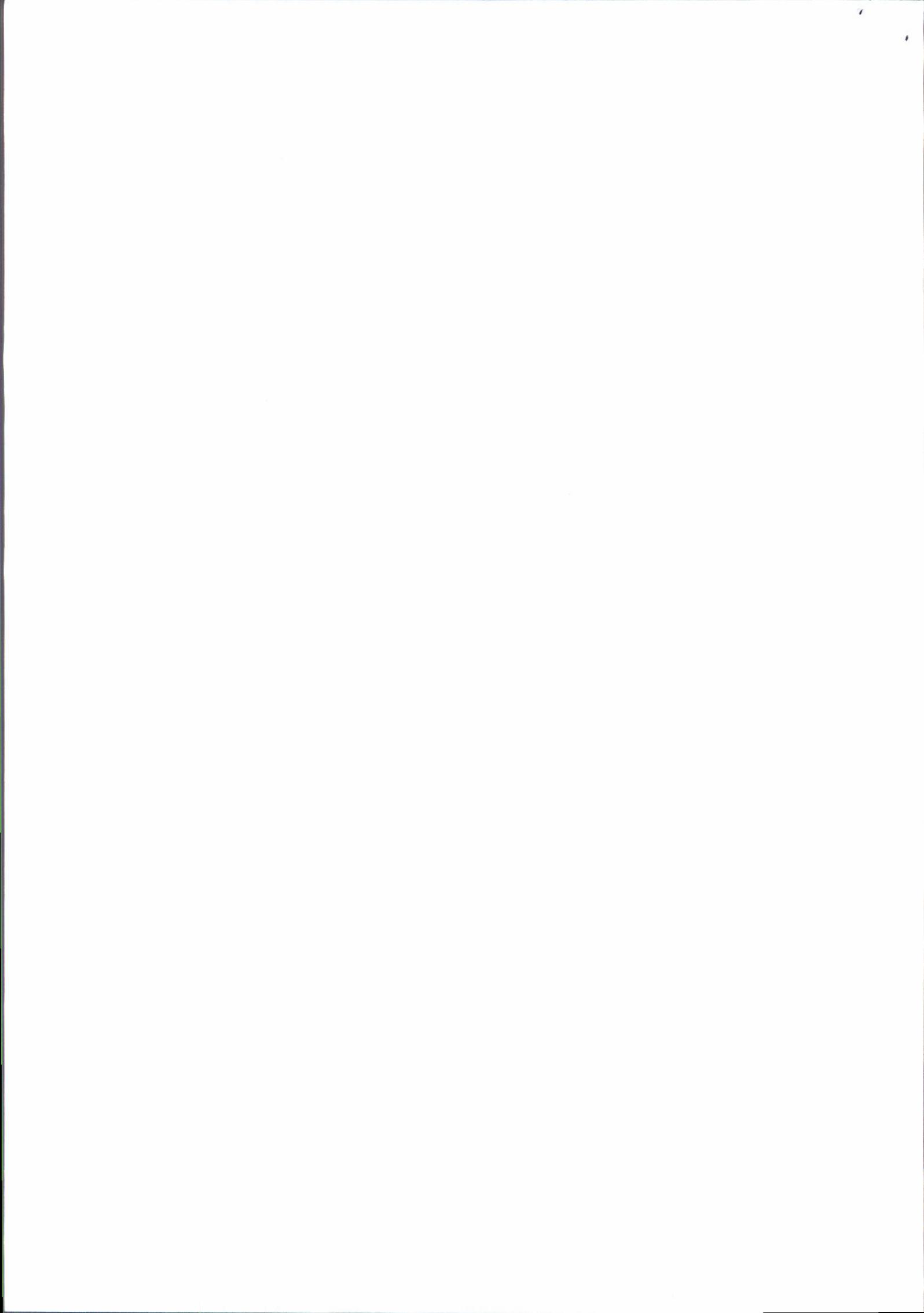
1. 개정이유

- 안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에 관한 조문 정비 및 지급 사실 확인 규정 신설(안 제9조)

- 3.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1
- 4. 현행조례 : 붙임 2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3
- 6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



○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7. 부서검토의견

: 붙임 5

[붙임 1]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

**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
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급공사” 를 “건설기계를 임
대차한 관급공사” 로 한다.

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관급공사수급인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
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, 계약부서 요청 시 별지 제4
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
여야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유재수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2)

<신 설>

[별지 제4호서식]

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

- 사업명
- 업체명
- 건설기계명

건설기계 성명	사용주 주소	기계			사용일 (일간)	임대료 지급금액(원)	본인확인인)	연락처	비고
		기종	형식	등록번호					
합계									

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내역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계약자 주소

장소

대표자

(인)

붙임 임대료 통장사본, 이체내역서 등 증빙서류 각 1부

안산시 (분임)재무관 귀하